

[사 건 명] 행심 2018 - 5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18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0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18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고등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8. 9.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8시간,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9. 4.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8. 10.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가. ○○○가 청구인의 친구, 선배들에게 청구인에 대한 험담과 욕을 하고, 화해장소에 형들을 데리고 나와 위압감을 조성했으며, 화해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주변에 ‘청구인이 싸가지가 없다, 죽여 버리고 싶다’ 는 등의 말을 하여, 청구인은 ○○○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다.

나. 학생회실에서 ○○○를 만났을 때 ○○○가 3학년 형들과 있어서, 청구인은 위협을 느끼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방어차원에서 ○○○와 똑같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다. 생활안전부에서는 청구인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폭위에 가서 말하라며 가해자로 취급했고, 학폭위 위원님들은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은 사

실을 인정했다고 치부하며 ○○○를 소수로, 청구인과 ■■■을 다수로 보고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는 주변에 청구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모든 직위를 박탈시키겠다고 하며 피해자인척 한 것이고, 청구인은 학교임원으로써 모든 직위가 박탈되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안조사는 관련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이나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학폭위에 참석하여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진술하라고 안내해준 것이며, 진술서를 통해 주장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양측 모두 관련학생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사안조사를 하고 학폭위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 가해인지 피해인지 혹은 쌍방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다. 학폭위 위원들은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원들의 토의를 통해서 조치의 단계를 결정한 것이다.

라. ○○○○ 학생도 명예훼손, 언어폭력을 사유로 가해학생 조치를 하였으며, 양측이 서로에 대한 욕설과 위협 명예훼손 행위가 원인이 되어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된 것이지 청구인과 ■■■■■ 학생이 다수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한 것이 아니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 진술서, ○○○○ 진술서, 청구인과 ○○○○가 제출한 문자내역, 목격학생들 진술서, 학폭위에서의 청구인과 ○○○○ 측 각 진술,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생안전지킴이 부장이고, ○○○○는 3학년으로 학교 안전지킴이 선배로 2018. 7. 이전까지는 친한 사이였다.

- 2018. 7.초경 ○○○○ 문제로 청구인과 ○○○○ 간 갈등이 생겨서 청구인이 ○○○○를 피하자, ○○○○가 □□□□ 등 주변에 청구인에 대한 험담과 욕을

했고, ㉹㉹㉹가 사과했지만 청구인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서 연을 끊기로 했다.

- 2018. 7. 28.경 ㉹㉹㉹가 페이스북 댓글 문제로 2학년 ㉸㉸㉸과 다투자, ㉸㉸㉸이 ㉹㉹㉹에게 청구인과의 화해하라고 권하여, ㉹㉹㉹가 2018. 7. 30.경 청구인에게 연락했지만, 청구인은 ㉸㉸㉸으로부터 ㉹㉹㉹가 보낸 ‘이 새끼들 다 죽이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으로부터 ‘㉹㉹㉹가 너 죽일 것 같다’는 말도 들어서, ㉹㉹㉹와 화해를 하지 않고 도리어 문자 상 다투면서 갈등관계가 더 커졌다.
- 2018. 8. 8.경 1, 2학년 간부수련회에서 안전지킴이 부장인 청구인이 1, 2학년 학생들에게 ㉹㉹㉹에게 수능선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하며 ㉹㉹㉹를 비방했고, 그 사실이 2학년 간부인 ㉸㉸㉸ 등을 통해서 ㉹㉹㉹에게 전달됐다.
- 개학 후 ㉹㉹㉹는 화가 난 상태에서 3학년 동급생들에게 ‘청구인을 점심시간에 학생회실로 불러내서 그냥 욕하고 끝내겠다’는 말을 했고, 2018. 8. 17. 점심시간에 청구인을 학생회실로 불러서 ㉸㉸㉸을 동석시키고 간부수련회에서 청구인이 했던 말을 추궁하며 욕하자, 청구인도 대응하여 ㉹㉹㉹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가.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8. 8. 8.경 1, 2학년 간부수련회에서 학생들 앞에서 ○○○○를 비방한 행위와 2018. 8. 17.경 학생회실에서 ○○○○에게 욕을 한 행위는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언어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

학폭위는 학교지킴이 임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청구인이 학교선배인 ○○○○에게 위와 같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8시간,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가 □□□□ 등 주변사람들에게 청구인에 대한 험담과 욕을 하고, ■■■■에게 ‘청구인을 죽여 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서, 청구인이 1, 2학년 간부수련회에서 ○○○○에게 수능선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를 비방하게 된 것인 점, ○○○○가 3학년들에게 청구인을 학생회실로 불러 욕하겠다고 말하고 학생회실로 청구인을 불러서 간부수련회에서 했던 말을 추궁하며 욕하자, 청구인도 대응해서 우발적으로 욕을 한 면이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님이 학교선생님을 통해서 ○○○○와 그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싶다는 말을 전한 점, 본 사건으로 청구인이 학교임원을 그만두게 된 점, 청구인과 ○○○○ 행위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세부기준 상 양자 간 큰 차이를 둘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면이 있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